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2016년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Mapo-Gu
Ombudsman System
Report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간사

마포구는 투명한 행정운동을 전제로 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행정, 법률, 건축 전문가를 위촉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마포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 깨끗한 공공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점은 구정에 청렴과 협치를 강조하고, 교육 도시로써 역할 증진에 힘쓰고 있는 마포구의 정책 방향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간된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를 보면 총 30건의 고충민원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고충민원을 주택건축, 공공시설, 도시계획, 도시교통, 보건사회, 산업경제, 상하수도, 일반행정, 재무행정 등으로 나뉘보면 이 중 주택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민원이 12건으로 전체 고충민원의 40%를 차지합니다. 주로 이웃의 주택, 아파트 등의 개발과 공사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계층의 재산상 권익보호 차원의 민원 제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피해에도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중요한 전제 여섯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첫째, ‘객관성’입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객관적 사실을 정연하게 들여다보아야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기에는 옴부즈만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셋째, ‘사명감’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바르게 처리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민원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성실성’입니다. 지극한 마음이 없으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융통성’입니다. 고충민원에는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함께 존재하며 여러 부서의 업무가 연관되어 있어 총체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입니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각각의 전문적 판단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인 분석으로 최대한 오류 없는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민원인과 피민원인을 설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옴부즈만 임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출된 판단 결과를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함께 수용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옴부즈만으로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어떤 민원인은 명쾌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에 감사해하며 이를 계기로 이웃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와 화합의 가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어준 긍정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소통이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제도의 일환으로 발족된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의 소통창구로써 그 역할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시대적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마포구 옴부즈만

김순도

+ 목 차

I. 옴부즈만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0
2. 구성 현황	12
3. 직무 및 권한	13
4. 정례회의	15
5. 업무 처리 절차	16

II. 2016년 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실적	20
2.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내역	22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실적	28
4.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내역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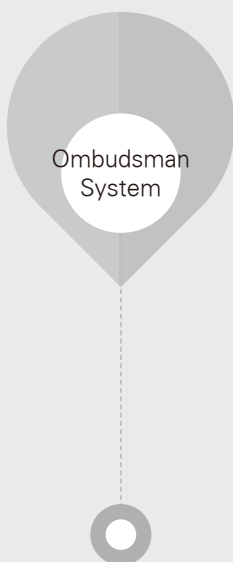
III. 2016년 옴부즈만 운영 사례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1-1. ○○동 ○○빌라 공동주택 관리 요망	34
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반대	38
1-3. 아현시장 통행 불편 관련 민원	40
1-4. ○○동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 요청	43
1-5. 마포소공원 비둘기 떼 피해 민원	49
1-6. ○○동 건축물대장 정비 요청	51
1-7. ○○동 ○○번지 건축허가 요청 민원	57
1-8. ○○마트 쌀 가격 폭리 민원	62
1-9. ○○아파트 동대표 자격 민원	65
1-10. ○○동 ○○-72번지 공사피해 민원	67

2. 제도개선 주요 사례	
2-1. 주민 의견수렴 방법 관련 개선방안 권고	69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사례	
3-1. 2015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71
3-2. 2015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73
3-3.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75
3-4.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77
3-5. 사회복지시설 LED 구매 지원	78
3-6.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79
3-7. 와우교 기능개선 공사	80
3-8. 홍제천 산책로 정비 공사	81
3-9. 2016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82
3-10. 동도중학교 주변 보도확장 공사	83
3-11. 2016년 구립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84
3-12. 구 청사내 무선인터넷 구축	85
3-13. CCTV 자가통신망 공사	86
3-1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87
3-15. 마포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88
3-16.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89
4. 기타 활동 사례	90

IV. 참고 자료

1. 주요 언론 보도 내역	94
2. 정례회의 추진일지	101
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2
4.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18



I . 옴부즈만 운영 개요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구성 현황
3. 직무 및 권한
4. 정례회의
5. 업무 처리 절차

—

I. 옴부즈만 운영개요

0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가. 도입배경

-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채택된 이래 주로 북유럽에서 발전해 온 제도로,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이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이다. 그 후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지금은 영국·이스라엘·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 시대가 발전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였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도 다양해졌으나,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만 및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 이에 마포구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나.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다. 추진경과

-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4. 24.)
-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4. 10. 16.)

- 옴부즈만 공개모집 (2014. 11. 3 ~ 11. 7.)
-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2014. 11. 14.)
- 옴부즈만 사무실 설치(2014. 12. 16.)
- 제192회 마포구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 (2014. 12. 19.)
- 제1기 마포구 옴부즈만 3인 위촉 (2015. 1. 1.)
- 제1차 옴부즈만 정례회의 개최(2015. 1. 9.)
- 서대문구 옴부즈만과 간담회 개최(2015. 10. 6.)
- 지방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참석(2015. 10. 14.)
- 옴부즈만 협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참석(2016. 2. 29.)
- 2015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2016. 3. 7.)
- 2015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구의회 보고(2016. 3. 7.)
- 안양시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간담회 참석(2016. 8. 5.)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업무협력 워크숍 참석(2016. 10. 13.)
- 안양시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간담회 참석(2016. 10. 21.)
- 마포구 주관 지방옴부즈만 간담회 개최(2016. 12. 1.)

02 구성 현황

가. 구성 및 지위

- 지 위 : 구청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
- 임 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 방식 : 공개모집에 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운영 방식 : 전원합의제
- 구성 현황

성명	주요 경력
이수복 대표 ombudsman	·서강대학교 법학석사 ·前 마포구 공보과장
김순도 ombudsman	·前 예상건축사사무소 대표 ·現 디자인그룹예상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철기 ombudsman	·前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現 법무법인 세강 대표 변호사

나. 자격 요건 (조례 제3조 제3항)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03 직무 및 권한

가. 직무관할 (조례 제5조)

-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 (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나. 주요 직무 (조례 제4조)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mbudsman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다. 주요 권한

1) 고충민원의 조사 (조례 제14조)

-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의 의뢰도 할 수 있다.
-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ombudsman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조례 제16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조례 제17조)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조례 제19조)

-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5) 운영상황의 보고 (조례 제20조)

-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6)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조례 제22조)

-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ombudsman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ombudsman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04 정례회의

- 정례회의 : 주 1회 개최(2016년 50회 개최)
- 기 능
 - 고충민원 조사 여부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 고충민원 조사결과 공유, 논의 등 처리방향을 전원합의제로 의결
 - 우리구 주요 반복민원 검토, 구정 주요 현안 공유
 - 청렴계약 감시·평가 점검 및 검토
 - 관련 부서 및 민원인 의견 청취, 현장 조사 등



회의사진



현장조사

05 업무 처리 절차

가. 고충민원 접수 및 조사 (조례 제12조 ~ 제19조)

1) 고충민원 신청

-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방문, 인터넷 게시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읍부즈만에 게 신청한다.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사여부 결정

- 정례회의 시에 직접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담당 읍부즈만을 지정하고 민원인 및 관련 부서에 조사 실시를 통보한다. (단순민원은 관련 부서로 이첩한다.)

3) 민원조사 실시

-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4) 조사결과 통보

- 조사가 완료되면 정례회의 시에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관련 부서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을 통보한다.
- 읍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읍부즈만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고충민원의 반려 등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읍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읍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조례 제21조 ~ 제23조)

1) 운영계획 수립

-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 옴부즈만은 제출 목록을 바탕으로 매년 활동범위를 정하여 청렴계약 감시·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감시·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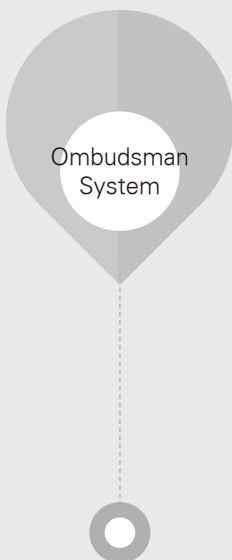
-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3) 감시·평가 결과 통보

- 평가가 완료되면 정례회의 시에 전원합의제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관련 부서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을 통보한다.
-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감시·평가 주요 검토 사항

- 사업추진의 타당성,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요건의 적정성
-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 여부
- 설계의 적합성(도면 부실 여부 등), 설계변경 여부 및 필요성
- 추진의 적정성(이유 없는 공사 지연 여부 등)
- 시공품질 점검 및 설계도면과 시공현장 비교



Ⅱ . 2016년 옴부즈만 운영 성과

—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실적
2.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내역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실적
4.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내역

—

II. 2016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0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실적

가. 총 평

- 2016년은 마포구 옴부즈만이 도입된 두 번째 해로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시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었고 이에 2015년도 대비 고충민원 접수·처리 건 수가 220%가 상승하였다.(직접조사 건수도 7건에서 14건으로 증가) 민원 분야는 2015년에 이어 주택건축·도시교통 분야가 가장 많았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민원은 증가할 것이고 계속해서 재개발사업,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등 주택건축 분야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민원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옴부즈만에 대한 구민의 인식이 2015년도에 비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아직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구민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앞으로 옴부즈만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옴부즈만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더 많은 구민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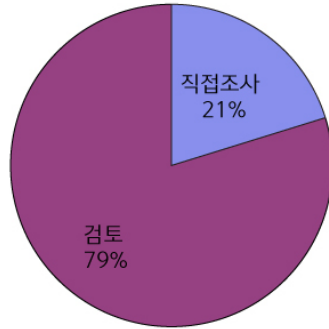
나.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계	민원 구분		조사 여부	
	신청민원	반복민원	직접조사	검토
66	59	7	14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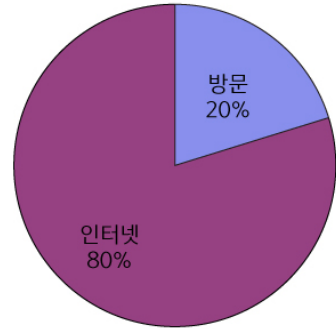
다. 민원 접수 방법 및 처리기간 현황

접수 방법(건)			처리기간(일)		
계	방문	인터넷	평균	최대	최소
66	13	53	12	125	1

민원 조사여부 현황



민원 접수 방법 현황



라.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건)

계	일반 행정	산업 경제	청소 행정	주택 건축	도시 계획	녹지 환경	도시 교통	공공 시설	보건 위생
66	5	2	7	17	6	8	12	7	2

마. 민원처리 결과 현황

(단위:건)

계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중
14	.	2	4	3	4	1

바.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단위:건)

계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비고
6	4	1	1	.

02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내역

가.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1	○○동 ○○빌라 신축 당시, 건축법에 따른 개별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음 (처리기간 : 15. 11. 25. ~ 16. 3. 30.)	-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 - 또한, ○○빌라 회장, 총무 등과 면담하여 입주민들의 요구사항, 빌라 특성에 맞게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줌	권고
2	청소년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반대 (처리기간 : 2. 24. ~ 3. 9.)	-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면담 시에 문의사항에 대해 모두 상담해주었으며,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이 현재 마포구에 접수되어 있지 않아 조치할 사항이 없어 종결처리함	조정
3	아현시장 및 주변 도로에 가판대, 노점 등으로 차량 통행과 보행이 불편하니 시정해줄 것 (처리기간 : 3. 16. ~ 4. 20.)	- 마포구 공무원들과 상인연합회가 합동으로 상인들에 대한 자율 경계선 준수 등을 계도하고 단속할 것	의견표명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4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과거 4회 영업자 명의변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유로 금번 영업자 지위승계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함 (처리기간 : 4. 15. ~ 4. 29.)	- 이 건 건물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일부가 철거되어 건물의 효용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수차례에 걸쳐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이 이루어져 민원인으로서의 영업자 지위승계가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을 것	의견표명
5	마포소공원에서 시작된 비둘기 떼의 배설물 등으로 인해 ○○오피스텔에 피해가 있으니 현수막 게시 등 적절한 대책을 요청 (처리기간 : 5. 4. ~ 5. 18.)	- ○○오피스텔에 추가로 조류퇴치제를 교부해주고 비둘기 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마포소공원 관리에 힘쓸 것	의견표명
6	○○동 ○○-2번지 건축물대장에 집합건축물 1동, 일반건축물 1동(총 2개동)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번지에 1동, ○○-11번지에 1동이 존치되어 있으니, 현황대로 건축물대장을 정비해줄 것 (처리기간 : 7. 20. ~ 9. 28.)	- ○○-11번지 지상의 건물과 ○○-2번지건축물대장상의 건물이 동일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재 상태에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음	불인용
7	○○구역 재건축 상가세입자가로서 이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 (처리기간 : 6. 15. ~ 7. 13.)	-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세입자 측에서는 ○○단체를 통해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관련 부서장이 민원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보고 진전이 없을 시에 옴부즈만의 개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조정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8	○○구역 재건축 공사 관련 공사계획 변경,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대책 요구 등 (처리기간 : 6. 15. ~ 7. 13.)	- 조합과 ○○아파트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	조정
9	신축허가 관련 허가 대지와 인접한 ○○동 ○○-5번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음. 이 번지가 공원부지라는 사유로 심의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시정해 줄 것 (처리기간 : 7. 28. ~ 8. 10.)	- 인접지인 ○○-2번지 기존 건축허가와 의 형평성 문제, ○○-5번지 공원부지가 공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현황도로로서 기능이 더 크다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사실상 현황도로를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건축법상 도로로 적용할 것	의견표명
10	○○마트에서 “○○쌀”을 다른 마트에 비해 비싸게 팔아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시정해 줄 것 (처리기간 : 7. 28. ~ 8. 10.)	- 관계 법령상으로 점포마다 판매가격이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민원인과 점주와 대화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종결함	불인용
11	청암대 ↔ 공덕역을 순환하는 기존 버스 노선을 도화동 현대홈타운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 (처리기간 : 8. 17. ~ 9. 28.)	-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버스 노선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각 부서별 임의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예시 마을버스 노선 변경, 동 경계 조정 등)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시스템을 정립할 것	권고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12	〇〇동 〇〇아파트의 동대표로 당선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을 제외하고 마포구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한 것은 회장의 직무위반이니 이를 시정해 줄 것 (처리기간 : 10. 12. ~ 10. 19.)	- 민원인이 동대표로 당선된 것은 맞지만, 주택법에 따라 동대표 자격은 없음.	불인용
13	〇〇동 〇〇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하여 주택의 균열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보상 내지 복구하여줄 것 (처리기간 : 15. 11. 16. ~ 16. 1. 11.)	- 민원인의 주거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건축 관계자에게 추가보상과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축 관계자 측은 “이미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민원으로 인한 고통이 커 형사고소도 취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종결함	불인용
14	〇〇동 공영주차장 증축 및 패션지원센터 건립 반대 (처리기간 : 16. 12. 21. ~)		진행중

나. 기타 민원 검토 현황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1	나무 가지치기 요청	공원녹지과
2	○○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의	주택과
3	아현동 주민센터 민원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	아현동
4	마포구민체육센터 이용 불편사항 개선요청	생활체육과
5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요청	청소행정과
6	종량제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청소행정과
7	관광버스 주정차 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8	상수동 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9	마을버스 노선 변경 요청	교통행정과
10	음식물쓰레기통 이동 요청	청소행정과
11	○○구역 재건축 공사 철거 소음 피해	환경과
12	아현동 주정차 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13	상수동 주차장 불법시설물 시정 요청	교통지도과
14	용강동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요청	용강동
15	염리동 위법건축물 단속 요청	도시경관과
16	아현동 주정차 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17	○○아파트 보일러 전환 자문 요청	주택과
18	공덕역 이마트 부근 주정차단속 CCTV 설치 요청	교통지도과
19	신축건물 주차장 대수 문의	건축과
20	향동천 수질관리 요청	치수과
21	홍대 불법광고물 및 노점 단속 요청	도시경관과, 건설관리과
22	연남동 위법건축물 확인 요청	도시경관과
23	염리동 빗물고임 문제 해결 요청	치수과
24	국민건강보험공단 리모델링 공사 소음 피해	주택과
25	○○구역 동호수 추첨 관리감독 요청	청소행정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26	재활용정거장 폐지 요청	청소행정과
27	현석어린이공원 공사 소음 피해	공원녹지과
28	용강동 음식점 이용 불만	위생과
29	합정동 신축건물 하자 해결 요청	건축과
30	성산동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타기관 이송
31	공동주택 실외기 열기로 인한 불편	주택과
32	세무2과 직원 불친절	세무2과
33	합정동 신축건물 하자 해결 요청	건축과
34	성산동 신축 공사장 안전장치 요청	건축과
35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도로 불편	건설관리과
36	연남동 위법건축물 단속 요청	도시경관과
37	성산동 건축허가에 대한 이의	건축과
38	나무 가지치기 요청	타기관 이송
39	교통정책 수립 요청	타기관 이송
40	○○구역 재개발 공사 소음 피해	환경과, 주택과
41	거주자주차구역 내 폐기물 수거 요청	교통지도과
42	신공덕동 볼라드 설치 요청	토목과
43	상수역 3번 출구 환경 개선 요청	건설관리과
44	나무 제거 요청	타기관 이송
45	용강동 쓰레기 제거 요청	청소행정과
46	신공덕동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건축과
47	마을버스 무임승차 시정요구	교통지도과
48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제거 요청	청소행정과
49	성산동 무단투기로 해결 요청	청소행정과
50	상암동 도로 포장 요청	토목과
51	계단 보수 보강 요청	토목과
52	아현동 과속방지턱 보완 요청	토목과

0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실적

가. 총 평

- 마포구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중 공사 9건, 용역 3건, 물품구매 6건 등 총 18건을 감시·평가하여 1건을 시정요구하고 6건을 의견표명하였다.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면담하여 계약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합법성, 예산의 낭비요소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였다.
- 2017년에는 기존의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와 더불어 구민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또한 활발히 실시할 것이다.

나.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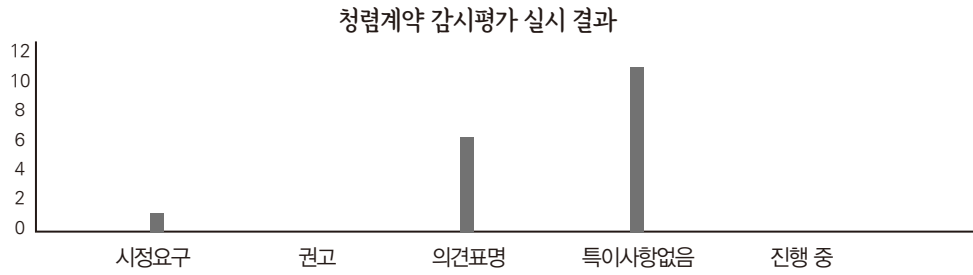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위:건)

계	구 분		
	공사	용역	물품구매
18	9	3	6

다.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결과

(단위:건)

계	조치유형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특이사항 없음	진행 중
18	1	.	6	11	.



라.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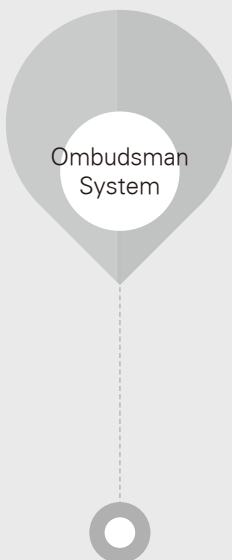
(단위:건)

계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비고
7	6	1	.	

04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내역

연번	사업명	조치의견	조치유형
1	2015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 도로굴착 후에 마무리가 거칠게 된 2 곳을 원상복구할 것	의견표명
2	2015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성미다리 데크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 하고 제설함의 위치를 변경할 것	의견표명
3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 용역	- 특이사항 없음	
4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 특이사항 없음	
5	사회복지시설 LED 구매 지원	- 특이사항 없음	
6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과 물품관리대장 현황을 일치시킬 것	의견표명
7	와우교 기능개선 공사	- 특이사항 없음	
8	홍제천 산책로 정비 공사	- 특이사항 없음	
9	2016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계단에 누락된 미끄럼방지 물딩을 시공할 것	시정요구
10	동도중학교 주변 보도확장 공사	- 특이사항 없음	
11	2016년 구립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도서관팀과 중앙도서관추진단이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여 중앙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 -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타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도서관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의견표명
12	구 청사내 무선인터넷 구축	- 특이사항 없음	

연번	사업명	조치의견	조치유형
13	CCTV 자가통신망 공사	- 특이사항 없음	
1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계약 업체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시정할 부분이 생기면 바로 시 정을 요구하고 이를 업체 용역 평가 에 반영할 것	의견표명
15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	- 특이사항 없음	
16	마포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 누구나 쉽게 마포구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고 젊은층과 노년층 모두가 공 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할 것	의견표명
17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 특이사항 없음	
18	백범로 가로등 개량 공사	- 특이사항 없음	



Ⅲ. 2016년 옴부즈만 운영 사례

—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2. 제도개선 주요 사례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사례
4. 기타 활동 사례

—

Ⅲ. 2016년 옴부즈만 운영사례

0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동 ○○빌라 공동주택 관리 요망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최○○ 외 187인
- 신청일 : 2015. 11. 23.
- 민원요지 : ○○동 ○○빌라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관리해 줄 것
 - 빌라 신축 당시, 건설업자가 주택법의 공동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을 회피하고 20세대 이상 가구의 공동주택 일반분양 규제를 따르지 않으려고 건축법에 따른 개별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
 -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음
- 진행경위
 - 2015. 11. 23. : 옴부즈만에 민원 접수
 - 2015. 12. 21. : 옴부즈만, 주택과 민원 현장 방문
 - 2016. 1. 13. : 민원 신청인 외 2인 면담
 - 2016. 2. 4. : 주택과에 옴부즈만 조치의견 권고
 - 2016. 2. 12. : 주택과, 자치행정과에서 현장 방문
 - 2016. 9. : 관리규약 제정에 관한 민원 재접수
 - 2016. 10. 5. : 민원 현장 방문
 - 2016. 12. : ○○빌라 반상회 회장 면담

나. 조사내용

1) ○○빌라 사실조사

○○빌라는 명칭은 비슷하지만 각 동별 8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 당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각각 개별의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반상회(회장 1인, 총무 1인)에서 관리비를 걷고 경비원을 관리하고 있다.

2) 관련 부서 의견

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현재 30세대 이상, 당시 20세대 이상)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런 기준을 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는 사례가 있음

나) 이 경우「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되었으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우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한 지원도 어려움

다. 조사결과

1) 건축허가 관련

가) 「건축법」과 「주택법」상 차이

구 분	건 축 법	주 택 법	비 고
허가방식	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	
세대수	29세대 이하	30세대 이상	*과거 20세대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준주택		고시원, 노인복지, 오피스텔	
예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적용		

나) 민원인은 ○○빌라 신축 당시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규제 등을 회피하려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건축법의 개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를 마포구가 받아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빌라는 건축법에 따라 각 동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관련 판례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당시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즉,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함을 이유로 불허가처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4. 6. 22. 선고 94구7494판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분할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제1항이 적용되어 사업승인을 요하는 경우는 원고가 위 분할된 인접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위 소외인들과 동일한 사업주체에 속하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들과 통모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분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또한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공동주택 지원 관련

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빌라는 신축 당시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빌라는 각 8세대씩 총 80세대에 달하는 다세대주택이고 입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니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반상회(회장 1명, 총무 1명)를 구성하여 가가호호 관리비를 걷고 경비원 월급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빌라의 특성에 맞는 집행부 구성, 주차 문제, 옥상 문제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주기로 하고 민원 신청인 대표에게 의사를 물었으나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표하였다. 2016. 7월 말에 반상회 회장이 새로 선임되었고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제정하기를 위해 옴부즈만에 다시 도움을 청하였다. 옴부즈만은 처음 민원 접수 당시의 조사 자료와 재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반상회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라. 조치의견 : 권고

○○빌라는 신축 당시「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렵다고 보인다. 하지만 ○○빌라는 각 8세대씩 총 80세대에 달하는 다세대주택이고 입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마. 부서 조치결과

○○빌라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이 불가하므로, 2016. 2. 11. 주택과와 자치행정과 관련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였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반대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일 : 2016. 2. 23.
- 민원요지 : ○○아파트 상가 내 PC방이 입점하는 것을 반대
- 진행경위
 - 2016. 3. 2.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2인 면담

나. 조사결과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관련

가) 이 민원은 ○○동 ○○아파트 상가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이 입점하려고 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청소년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입점을 반대한 집단민원이다. 민원인을 면담하고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 PC방 등록 신청이 마포구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으며, 업주가 간판을 다는 등 개업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업주가 관계 법령의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이 접수될 경우, 마포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이고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 상대정화구역 해제 관련

가) 현재 ○○아파트 상가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교보건법」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PC방 등록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하여 업주가 측량을 하여 상대정화구역 해제 신청을 하였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는 통과하지 못하였다. 상대정화구역이 해제되지 못하였지만, 업주가 개업 준비를 하고 있어 마포구와 서부교육청에 PC방 입점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면담 시에 아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고, 마포구에서는 적법한 신청일 경우 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입점을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주 또한 사인이어서 옴부즈만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현재는 상대정화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마포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서부교육청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을 조언하였다.

다. 조치의견 : 조정

민원인 면담 시에 위와 같은 사항을 비롯하여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모두 안내하였고, 현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이 마포구에 접수되지 않아, 옴부즈만에서 마포구에 조치할 사항이 없어 이 민원은 종결하고자 한다.

아현시장 통행 불편 관련 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한○○
- 민원요지 : 아현시장 및 주변 도로에 가판대, 노점 및 불법 건축물 등으로 차량통행과 보행이 불편하고 인접지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3,885세대) 입주 후, 통행량이 대폭 증가되었음. 또한,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 진행경위
 - 2016. 3. 16. : 관련 부서 담당자 면담
 - 2016. 3. 30. : 현장방문, 상인연합회 회장 면담

나. 조사결과

- 가) 현장 상황을 파악해 보니 아현초등학교 담벼락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 등 점포와 달리 아현시장 내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비, 지방비, 구비 등을 투입하여 이미 시장 내 아케이드 등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되고 있었다.
- 나) 물론 시장 내부는 기존 건물에서 튀어나온 차양 부분에 점포들을 꾸려 운영하고 있어 건축법규 측면에서는 무허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또는 천막 지붕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법규적인 측면이나 현실적으로 일부 무허가 건물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 다) 그리고, 시장 내부 통행로 부분의 자율 경계선은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북측의 시장 진입 부분은 통행로를 일부 침범하여 상품을 진열하고 있었고 남측의 끝 부분 역시 일부 점포가 통행로를 침범하여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라) 이런 부분은 구청 관련 부서와 상인연합회가 상호 간에 협조하여 수시로 계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아현시장 내 상인들은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여 시장 자체의 자율적인 정비로 질서 있는 전통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통행의 문제와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 등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재래시장이 갖는 소방의 취약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방 설비 설치와 각 점포별로 개별 소화기 비치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차, 상품 및 쓰레기 적치 등 통행 방해 요소들을 정비·단속하여야 한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이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부서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지역경제과

가) 상인연합회와 상인들의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여 상인들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통시장이 본래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도 및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지역경제과 공무원들과 상인연합회가 합동으로 상인들에 대한 자율 경계선 준수 등을 계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시장 상인연합회장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나) 따라서, 수시로 시장에 출장하여 현장을 파악하고 상인연합회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하고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며 시장의 출장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 관리대장 등을 비치·관리토록 할 것을 권함.

- 시장 내 통행로 자율 경계선 준수 : 통행 및 소방차 소통 원활 도모
- 시장 남측 진입부분 아케이드 또는 천막지붕 보충공사 등 필요
-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친목과 소통 도모로 사장 상인들의 자율적인 정비 유도
- 소방시설의 확충 : 마포 소방서와 협조 (상가별 개인 소화기 구비 필요성 있음)
- 불법 주차차 문제로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와 협조하여 단속 할 것
- 완전한 협조는 한계가 있겠지만 상인연합회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예) 지역주민들에게 시장이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시장에 대하여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의견을 청취해보는 노력(시장 내 점포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여야 함).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명절 이벤트 행사 개최 방안 등

2) 도시경관과

- 가) 시장 내 불법건축물 동수 및 발생 연도 등 현황을 파악할 것
- 나) 시장 내 불법건축물 발생 방지(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을 것)

3) 건설관리과

- 가) 시장 내 통행로 자율 경계선 준수 위반 점포에 대한 계도 및 단속
- 나)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과 협조하여 시장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통행로와 소방도로 확보토록 유도할 것
- 다) 현재는 그런대로 정비되어 있지만 향후에도 현장을 출장하여, 시장 주변의 도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상품, 적치물 등의 발생 될 경우, 이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함.

4) 교통지도과

야현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다만, 지나친 엄한 단속으로 시장 내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단속을 해야 될 것임.

라. 부서 조치결과

수시로 시장에 방문하여 상인회, 상인들과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객선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음.

○○동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 요청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김○○, 박○○
- 민원요지 :
 - 2003. 6. 23. ~ 2004. 9. 1. 실시된 “○○대로~○○길 접속부 가각정리공사” 당시, 마포구 ○○동 ○○-103 건물일부 및 ○○동 ○○-147, ○○-148, ○○-149 토지(당시 소유주 : 조○○)가 공용협의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잔존건물이 남게 되었고, 이 때 마포구 관련 공무원들이 손실보상 후, 잔존건물의 정리 개축은 합법적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함.
 - 이에 민원인은 이를 신뢰했는데 그 뒤에 마포구청은 이 건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였고, 지금에 와서 「건축법」 제79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 등을무리하게 적용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그 동안 마포구청은 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영업자 명의변경 및 업소명 변경을 해준 선행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영업자 지위승계를 불허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음.

나. 조사내용

이 민원의 그 동안 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66. 3. 10. : ○○동 ○○-103 사용승인
 - 구조 : 연와조 세멘와즙, 1층 면적 : 62.71㎡
- 1983. 4. 22. : ○○동 ○○-103 소유권 변경(○○○->김○○)
- 1985. 6. 29. : ○○동 ○○-103 증축
 - 구조 : 연와조 세멘와즙, 1층 면적 : 119.94㎡, 2층 면적 : 57.54㎡, 계 : 177.48㎡
- 1999. 5. 27. : ○○동 ○○-103 소유권 변경(김○○->조○○)
- 2003. 6. 23. ~ 2004. 9. 1. : ○○대로~○○길 접속부 가각정리공사 실시
- 2004. 2. 20. : 토지 손실보상금 지급(당시 소유주 : 조○○)
- 2004. 3. 26. : 건축물 손실보상금 지급(당시 소유주 : 조○○)
- 2004. 3. : 위법건축물 주민신고(○○동 ○○-103)
- 2004. 4. 20. : 위법건축물 표기의뢰(주택과-4841)
- 2004. 6. 1. : 건축물 소유권 변경(조○○->박○○)

- 2005. 3. 10. : 위법건축물 표기의뢰(주택과-3381)
- 2013. 2. 6. : 영업자 변경(박○○->박○○, 박○○)
- 2014. 1. 9. : 업소명 변경(○○칼국수->##칼국수)
- 2014. 1. 9. : 영업자 변경(박○○, 박○○->김○○)
- 2014. 9. 29. : 영업자 변경(김○○->박○○)
- 2015. 4. 8. : 영업자 변경(박○○->김○○)
- 2016. 3. 29. : 대통령 비서실 민원 접수
- 2016. 4. 6. : 국민권익위원회 실지 조사
- 2016. 4. 25.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 공문
- 2016. 4. 26. : 옴부즈만 현장 방문

1) ○○동 ○○-103 건축물대장 및 현장확인 결과

(구)건축물대장		(현)건축물대장		보상 면적		잔존 면적		현장확인 결과		현재 위반 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	168㎡					대지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	62.71㎡	연면적	177.48㎡	연면적	68㎡	연면적	109.48㎡	연면적	약 200㎡	연면적	90.52㎡ (약 27평)
1층 면적	62.71㎡	1층 면적	119.94㎡	1층 면적	34㎡	1층 면적	85.94㎡	1층 면적	약 100㎡	1층 면적	약 14.06㎡
2층 면적		2층 면적	57.54㎡	2층 면적	34㎡	2층 면적	23.54㎡	2층 면적	약 100㎡	2층 면적	약 76.46㎡
구조	연 와 조 및 세 멘 벽 돌 조, 지붕: 세 멘와즙	구조	연 와 조 및 세 멘 벽 돌 조, 지붕: 세 멘와즙					구조	철골구조 (철골기둥 + 철골 데 크플레이 트)	일부 현황만 파악됨	

2) 관련 부서 의견

가)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처리 시에 담당 공무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영업신고 부분이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는 신고 처리를 할 수 없음.

식약처 질의회신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시에도 영업신고와 동일하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에는 지위승계를 수리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식약처 질의회신 시달 전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시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아, 이 업소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해 조건부로 지위승계 수리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 중임.

※ 질의회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4356(2015.05.27.)호

판례(대법원, 2000도 2050, 2001.2.9.)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하는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별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나) 도시경관과

○○동 ○○-103번지 소재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대장과 구조 및 규모 등이 상이한 위반건축물임.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위반건축물을 시정해야 함.

3) 관련 법규

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등

나)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등

다. 조사결과

- 1) 건축법 제7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 건 민원인 소유의 ○○동 ○○-103 소재 건물은 현장확인 결과와 같이 위반건축물로 보인다. 이 경우,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의 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4356(2015.05.27.)호의 유권해석 내용인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하는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하여 위반건축물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 처분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 3). 가) 「식품위생법」 등 소위 공법 분야에서 일정한 신고, 허가, 등록 등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허가의 성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등에 의할 때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양도, 양수 또는 상속 등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려고 하는 자는 그러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의 “대인적 허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허가가 가능한 “대물적 허가” 성격이 결합된 “혼합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최초 신규 허가에 따른 행정행위든지 그 뒤에 일어나는 허가 사항 변경 등의 행정행위든지 간에 해당 허가는 동일한 허가 요건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민원은 이미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법분야에서 어느

법이 어느 법을 배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예, 「새마을 조직 육성법」 제4조 등) 하나의 행정행위는 모든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건 민원인의 영업자 지위승계는 영업대상지의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이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등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규정 등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2009. 4. 23. 선고2008도6829 판결도 유사한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나)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위와 그 간의 사건 진행 경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민원인이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될 당시 건물에 대한 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물의 효용에 해함이 없도록 한 후, 각종 공부를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오는 있으나 “○○대로~○○길 접속부 가각정리공사”라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철거된 것이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구민이 입어야 하는 피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지난 10년 이상 위법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 동안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을 구청이 허락하여 이미 민원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가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의 유권 해석으로 식품영업에 관하여 국민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업자 지위승계라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관점에서 관련 실정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약처의 유권 해석에 근거해서만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를 제한한다는 것은 옹색해 보인다는 것이다.

4. 가) 이 건 민원에 대하여 마포구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허가하고 있는 점,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구민들 누구에게나 불편, 부당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일응 민원인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은 허가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민원인도 위반건축물의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책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다만, 이 건 건물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일부가 철거되어 건물의 효용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법 상태에 있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이 이루어져 민원인으로서의 영업자 지위승계가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번 한 번에 한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허가하여 주되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다음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위반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그에 관한 각서를 징구한 후, 영업자 지위승계를 허가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행정행위를 담보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다) 첨언하면, 이 사건 의결로 인하여 이 건 위반건축물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건물의 소유자는 위반건축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법화시킬 것을 권고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불이익처분이 감수하여야 할 것을 고지하기로 한다.

라. 조치의견 : 의견표명

마포구 ○○동 ○○-103 소재 건물 1층에 대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다음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위반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그에 관한 각서를 징구한 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처리를 해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마포소공원 비둘기 떼 피해 민원

가. 민원개요

- 민 원 인 :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 김○○ 외 42인
- 신 청 일 : 2016. 4. 27.
- 민원요지: 마포소공원에서 시작된 비둘기 떼의 배설물, 잔해물(깃털) 등으로 인해 바로 옆 ○○오피스텔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1층 상가와 2층 ~ 3층 사이 난간에 피해가 심각하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 게시, 조류퇴치제 교부, 배설물 등으로 더럽혀진 오피스텔 청소, 버드스파이크 설치해줄 것을 요청함

나.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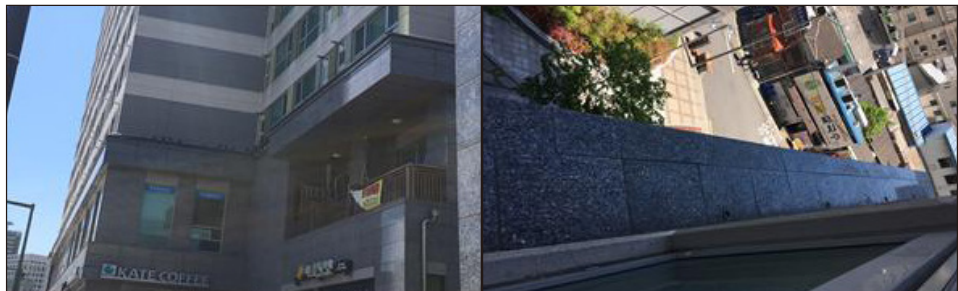
1) 공원녹지와 의견

마포소공원 내에 “비둘기 먹이 제공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또한 공원 내 곳곳에 조류퇴치제를 분사하였으며, ○○오피스텔 측에 조류퇴치제 1개를 교부하였음.

공원 내가 아닌 오피스텔을 청소하거나 버드스파이크를 설치하는 사항은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를 건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2) 현장방문

민원이 접수되고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 동행 하에 공원과 오피스텔을 둘러보았으며, 2~3층 난간에 비둘기 10여 마리가 앉아 있었고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인해 난간이 더럽혀진 상태였다. 센터장은 비둘기 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이번에 한해 오피스텔을 청소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다. 조사결과

- 1)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고 조류퇴치제를 분사하였고, 오피스텔 센터장은 조류퇴치제를 더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제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센터장의 요청대로 조류퇴치제는 추가로 더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2) 오피스텔 청소, 버드스파이크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포구에서 금번에 한해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으나, 사유재산 관리에 대해 구에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오피스텔과 마포소공원이 바로 접해있어 비둘기 떼가 두 곳을 이동하면서 배설물과 깃털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원 유지 관리에 힘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라. 조치의견 : 의견표명

○○오피스텔에 추가로 조류퇴치제를 교부해주고 향후에도 비둘기 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마포소공원 관리에 힘쓸 것을 의견표명한다.

마. 부서 조치결과

○○오피스텔에 추가로 조류퇴치제를 교부하였음.

○○동 ○○-2번지 건축물대장 정비 요청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김○○
- 민원요지 : 건축물대장상에는 ○○동 ○○-2번지 지상에 집합건축물 1동, 일반건축물 1동(총 2개동)이 있으나, 실제로는 ○○동 ○○-2번지 지상에 1동, ○○-11번지 지상에 1동이 존치되어 있으니 현황대로 ○○동 ○○-2번지 건축물대장 2개동 중 1개동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을 ○○동 ○○-11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함

나. 조사내용

1) 현황

○○동 ○○-2번지 지상에 2개의 건축물대장(1동 집합건축물, 1동 일반건축물)이 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건축물의 현황은 ○○동 ○○-2번지 지상에 1동, ○○동 ○○-11번지 지상에 1동이 각각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2번지 대지에는 1964. 12. 7. 지상2층 연면적 73.09㎡의 세멘트벽돌조 건축물 1동이 사용승인되었고, 1967. 7. 12. 지상2층 연면적 659.24㎡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1동이 추가로 건축되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내역과 건축물 존치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동 ○○-2 건축물대장

구분	건축물대장							
	구분	종류		구조	1층	2층	연면적	신축일자
OO-2	1개동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318.25㎡	근린생활시설 340.99㎡	659.24㎡	1967. 7.12
			전유부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202.68㎡	근린생활시설 213.32㎡	416㎡	
	1개동 면적	일반건축물 대장		세멘 벽돌조	근린생활시설 34.71㎡	근린생활시설 38.38㎡	73.09㎡	1964. 12.7
OO-11	건축물대장 없음							

나) ○○동 ○○-2, ○○-11번지의 건축물 존치 현황

구분	건축물 존치 현황				비고
	구분	1층	2층	3층	
○○-2	1개동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단, 건축물대장과 존치하는 건물이 동일 건축물인지는 의문임
○○-11	1개동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2)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 결과

○○동 ○○-2번지 및 ○○-11번지에는 각각 1개동의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현황과 실제 건축물 존치 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건축물대장과 존치 현황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일치한다.

3) 지적도 및 현장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11 건축물	○○-2 건축물
	

4) 주요 쟁점

이 민원 사안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가) ○○동 ○○-2번지에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재일인 1967. 7. 12일에 신축된 건축물인지 여부
- 나) ○○동 ○○-11번지에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이 ○○동 ○○-2번지의 건축물대장 등재일인 1964. 12. 7.일에 신축된 건축물인지 여부
- 다) ○○동 ○○-2번지에 당초 2개동의 건축물이 신축되었으나, 건축물을 1개동으로 합병하고 ○○-11번지에 다른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해서 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키려고 하는지 여부
- 라) ○○동 ○○-2번지에 당초 2개동의 건축물이 신축되었으나, 1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 ○○-11번지에 다른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해서 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키려고 하는지 여부
- 마) 1998년도에 이루어진 ○○길 확장 공사 관련 ○○동 ○○-10번지의 토지 및 건물의 보상 내역과 민원 사안 건축물과의 상관성 관계 등
- 바) 민원인의 민원제기 사항이 맞다고 가정한 경우, 건축물대장과 해당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 현황의 일치성 여부

5) 주요 쟁점 사항의 확인 내역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의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항공사진 확인

- (1) ○○동 ○○-2번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건축물 등재 여부를 도시경관과에서 확인하였으나, 등재사항은 없었다.
- (2) ○○동 ○○-11번지 지상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울시 건축기획과로 해당 건축물의 신축일자 확인을 요하는 항측 판독의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건축물의 각 연도별 항공사진을 확인하였다.

(3) 최초 항공촬영이 이루어진 1972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11번지 지상 건축물이 적어도 72년부터 존치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도에 이루어진 ○○길 확장 공사와 관련, 인접토지인 ○○동 ○○-10번지 토지 및 건물의 보상 후에 확장공사 과정에서 건축물 현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는 증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과의 동일성 여부를 항공사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해 보인다.

나) 건물면적 실측(1층 바닥면적 기준)

○○동 ○○-2번지 소재 건축물 2개동의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제 존치하는 건축물 2개동(1개동 : ○○동 ○○-2, 1개동 : ○○동 ○○-11)의 실측면적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면적 차이가 있다.

구분	건축물대장상 면적		존치건축물의 실측면적 (지적현황측량성과도)
○○-2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202.68㎡	민원인의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함
	일반건축물대장	34.71㎡	
○○-11	건축물대장 없음		46㎡

다) 과세내역 조회

- (1) ○○동 ○○-11번지 건축물의 과세내역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김○○)은 1994. 10. 19. ○○-2번지 소재 건축물 1개동을 상속받은 이후 건축물 취득신고를 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재까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그러나 재산세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소유자가 취득신고한 내용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내역만으로 해당 건축물이 공부와 동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라) 토지변동이력 조사

(1) ○○동 ○○-2번지 및 ○○-10번지의 토지변동 이력

날짜/ 토지변동	○○-2		○○-10	
	분할	합병	분할	합병
1973. 3. 22.	○○-52으로 분할 (분할 후 면적 : 73㎡)		○○-53으로 분할 (분할 후 면적 : 132㎡)	
1997. 6. 12.			○○-56으로 분할 (분할 후 면적 : 36㎡)	
1998. 11. 23		○○-10과 합병 (합병 후 면적 : 109.0㎡)		○○-2과 합병되어 말소
2009. 7. 21.		○○-67과 합병 (합병 후 면적 : 118.0㎡)		

- (2) ○○동 ○○-2번지와 ○○-10번 지 두 필지의 토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축물대장상 1967. 7. 12. 신축된 건축물은 당초 가옥대장에 등재된 지번이 ○○-2번지 외 1필지(○○-10)였으며, 건축물대장상 1964. 12. 7. 신축된 건축물은 당초 가옥대장에 등재된 지번이 ○○-10번지였다. 1998. 11. 23. ○○-2번지와 ○○-10번지 두 필지가 합병된 이후 ○○-2번지 소재 2개동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2번지로 변경되었다.

(3) ○○동 ○○-11번지의 토지변동 이력

날짜/ 토지변동	○○-11	
	분할	합병
1976. 7. 24.		○○-52, ○○-53번과 합병 (합병 후 면적 : 33.0㎡)
2009. 7. 21.		○○-66번과 합병 (합병 후 면적 : 55.0㎡)

마) ○○길 확장 공사(1997~1998) 당시 건축물 철거 및 보상 내역

- (1) 1997~1998년 도로개설사업인 '○○길 확장 공사'가 진행될 당시, ○○동 ○○-10번지 (이 시경 ○○동 ○○-2로 합병됨) 소재 건축물 2개동 중 1967. 7. 12.일에 신축된 건축물은 도로개설구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건축물의 일부 면적을 철거하고 보상받은 내역이 있다.
- (2) 그러나 건축물대장상 1964. 12. 7.일에 신축된 건축물은 철거 내역 및 보상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3) 1973. 3. 22. ○○동 ○○-2번지에서 분할된 토지 ○○동 ○○-52번지, 같은 날 ○○동 ○○-10에서 분할된 ○○동 ○○-53번지는 1998년도에 ○○길 확장 공사 부지로 공용협 의되어 마포구가 취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8. 2. 6.에 보상부서인 건설관리과는 건축과로 잔여지가 된 ○○동 ○○-10(대36㎡), ○○동 ○○-3(대73㎡)에 대한 건축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1998. 2. 9.에 건축과에서는 '당해 대지는 4종미관지구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이상으로 적용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다.
- (4)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그 당시, ○○동 ○○-11번지 지상보다는 오히려 ○○동 ○○-2번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그리고 ○○동 ○○-11번지 지상에는 위 항공사진 결과와 같이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이 최초 촬영되었던 1972년도 부터 존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동 ○○-2 건축물대장과 면적 등에 차이가 있다.

다. 조사결과 : 불인용

위와 같은 참고자료 및 정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마포구 ○○동 ○○-2번지 지상에 있는 2개동의 건축물대장 중 1개동의 건축물대장상의 건물 지번을 ○○동 ○○-11번지로 변경을 구하는 민원인의 청구는 ○○동 ○○-11번지에 존치되어 있는 건물과 ○○동 ○○-2번지의 건축물대장상의 건물과 동일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재 상태에서는 이를 판단 할 수 없고, (가사 동일 건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동 ○○-11번지에 존치되어 있는 건물과 ○○동 ○○-2번지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용도 등이 상이하므로 오히려 무단증축 또는 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 사용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신청취지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민원인의 신청은 불인용한다.

○○동 ○○번지 건축허가 요청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이○○

○ 신청일 : 2016. 8. 4.

○ 민원요지

- 마포구 ○○동 ○○번지 대지에 주택 신축허가를 위한 건축심의 신청 과정에서 허가 신청지 대지와 접한 공원부지인 ○○동 ○○-5번지 중 일부인 별지도면 ㄱ, ㄴ, ㄷ, ㄹ, ㄴ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 부분이 사실상 현황도로(이하 '현황도로'라고 함)로 사용되고 있어 이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로 보고 이를 허가 신청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에게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음.

- 그러나 2016. 7. 19. 건축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이 현황도로가 공원부지이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현황도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건축심의 불가 통보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이 공원부지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사실상 현황도로라는 점과 이미 인접 대지인 ○○동 ○○번지 건축허가 당시에 이 현황도로 일부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점과 민원인 소유 종전 ○○동 ○○번지 역시 주출입구가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해줄 것을 요청함.

나. 조사내용

1)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내역

가) 공사종별 및 용도 : 신축/근생 및 다세대주택

나) 건축규모 :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407.86㎡

2) 그간의 진행 경위

가) 2016. 7. 11. : 건축주 건축심의 신청서 접수

나) 2016. 7. 11. : 건축과에서 공원녹지과 등으로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다) 2016. 7. 15. : 공원녹지과에서 부서의견 회신

라) 2016. 7. 19. : 건축심의 불가 통보

마) 2016. 8. 4. : 고충민원 신청서 제출

바) 2016. 8. 10. : 민원인 및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3) 관련 부서 의견

가) 공원녹지과

허가 신청지 ○○동 ○○번지와 인접한 ○○동 ○○-5번지는 공원부지 내 일부 도로로
도시계획상 공원이므로 현황도로로 지정 불가

나) 건축과

현황도로이므로 검토 여지는 있지만 ○○동 ○○-5번지의 공원 관리 부서인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위와 같으니 건축심의는 불가

4) 관련 법규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제45조

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 등

다. 조사결과

- 1) 옴부즈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심의 신청 대상 현장을 조사해보니, 아래 현황
사진과 같이 현황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 2) 이 공원은 1977. 5. 6.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지목은 '공원'이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
원을 확인해 보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시설로 결정된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이 현황도로는 공원조성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현황도로와
인접한 개나리 어린이공원과 현황도로의 고저 지형의 낙차 폭이 크고 연결축이 자연스럽게 지
못하
며, 또한 이 현황도로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우리가 따른다. 공원과 사실상 별도로 구분되어 현행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 현행도로 우측 끝부분에는 아래 주택지로 연결되는 가파르고 좁은 계단통로가 있어 비록 제한적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서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바로 이 허가 신청지와 인접한 ○○동 ○○-2번지 지상 주택은 1998. 9. 13.에 사용승인 되었는데 ‘건축물 현황도’를 살펴보니, 이미 이 건 현행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 있었고 이 현행도로를 이용하여 인접지의 우회도로에 접근하도록 사용승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민원인 소유 종전 ○○동 ○○번지 역시 주출입구가 이 현행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이런 상태에서 ○○동 ○○-2번지 지상의 기존 허가주택과 달리 인접지인 이 건 ○○동 ○○번지 건축 허가 시에 이 현행도로를 건축법 소정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4) 그 다음 이 건 민원과 연계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생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 5) 위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을 보면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보도록 되어 있고,
- 6)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는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본문 단서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는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7) 그리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터 잡아 마련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3. 공원 내 도로”를 들고 있다.
- 8) 따라서 이 건 허가와 관련된 현황도로의 경우에도 위 관계법규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 조치의견 : 의견표명

- 1) 위와 같이 인접지인 ○○동 ○○-2번지 기존 건축허가와와의 형평성 문제, 민원인 소유 ○○동 ○번지 종전 주택의 기득권 보호, 관계법규의 적합성, 어린이공원과 이 현황도로의 낙차 폭이 커 공원으로써의 기능보다는 그 동안 유지해 온 현황도로로써 기능이 더 크다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편,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규제 법규의 적용을 완화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이 건 사실상 현황도로를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건축법상 도로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 2) 아울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해서 현황도로상의 현재 생육하고 있는 수목은 그대로 보존하고 낙차 폭이 큰 인접 공원의 지형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일부 구간의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이 현황도로 끝단에 2개 정도의 차단봉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 현황도로에서 우측 계단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는 나무 밑 화단을 잘 살려 개·보수하고 보존, 관리할 것을 함께 의견표명한다.

마. 부서 조치결과

옴부즈만의 의견표명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건 사실상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음.

○○마트 쌀 가격 폭리 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정○○
- 민원요지 : 관내 ○○마트 판매 물품에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으니 처벌해 줄 것과 “○○쌀”을 다른 마트에 비해 비싸게 팔아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시정해 줄 것
- 진행경위
 - 2016. 5. : 민원인이 ○○마트에서 “○○쌀” 구입하였다가 환불
 - 2016. 5. 11. : 구두 민원 제기
 - 2016. 5. 12.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1회)
 - 2016. 5. 20. : 진정서 제출
 - 2016. 5. 24.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2회)
 - 2016. 5. 30. : 구청장비서실에 진정서 제출
 - 2016. 5. 31.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3회)
 - 2016. 6. 7. : 진정서 제출
 - 2016. 7. 1.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4회)
 - 2016. 7. 4. :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2016. 7. 5. :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2016. 7. 13. :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2016. 7. 19.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5회)
 - 2016. 7. 26. : 서울시 민생경제과에 방문하여 상담
 - 2016. 8. 9. : 진정서 제출

나. 조사내용

2016년 5월 민원인은 본인의 집 근처 ‘○○마트’에서 “○○쌀” 10kg를 47,000원에 구입하였고, 이 사실을 안 지인이 해당 쌀을 왜 그렇게 비싸게 구입했느냐고 얘기하자 다른 업체 2곳에 방문하여 ○○마트보다 쌀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쌀을 반품하였다. 그러고 나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쌀의 최고가격을 지정하여야 하나 지정 누락되어 있고 해당 업체에서 동일 상품을 다른 업체에 비해 비싸게 팔아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가격표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포구에서는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인에게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하였으나, 민원인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옴부즈만에서 검토하였다.

1) 관련 부서 면담

가) 민원 사항 파악을 위해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와 면담하였고 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최고 가격의 지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주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업체 별로 판매 가격이 다른 것은 유통 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에서 제재할 수가 없다.

나) 또한 가격표시제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진열대 가장자리에 가격표시가 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가격 표시제를 잘 준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 여러 번 현장 점검을 하다보니, 해당 업체에서 가격표시제 준수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해당 업체 면담

해당 업체 점장과도 면담을 하였는데 점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당 쌀의 입고가는 35,000원 ~37,000원 정도이며, 민원이 제기된 후에 47,000원에 판매하던 쌀의 가격을 38,000원으로 변경하였지만 민원인은 우리 업체에 악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경우 쌀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옴부즈만과 함께 민원인을 만나 민원사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논의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싶은 의향도 있다.

3) 관련 법령

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최고가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고가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최고가가격의 지정 및 폐지)

- ①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가격 등의 표시)

-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조사결과 : 불인용

- 1) 부서 및 해당 업체 점장을 면담하고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가격의 규정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민원 사항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쌀이 47,000원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비싼 경향은 있으나, 민원 제기 후에 쌀 가격을 38,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유통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마포구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더 가격을 내리라고 강요할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 2) 해당 부서에서 민원 제기에 따라 해당 업체에 출장하여 수차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는데도 민원인은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지만,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옴부즈만의 주도 하에 민원인과 해당 업체 측과 면담을 하여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민원을 종결하였다.

○○동 ○○아파트 동대표 자격 관련 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형○○
- 민원요지 : 본인은 ○○동 ○○아파트의 동대표로 당선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을 제외하고 마포구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를 한 것은 회장의 직무위반이니 이를 시정해 줄 것

나. 조사내용

민원인은 ○○동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한 후에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당선증까지 교부받았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민원인은 동대표 자격이 없다며 명단에서 제외하고 마포구 주택과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를 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이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마포구에서는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하였으나, 민원인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옴부즈만에서 검토하였다.

1) 관련 부서 면담

민원 사항 파악을 위해 주택과 담당자와 면담하였고 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2) 민원인 면담

민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의견은 다음과 같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를 했더라도 동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동대표의 자격이 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11(2016.03.28 기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를 했더라도 이후 그 잔여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3) 관련 법령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 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 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 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 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 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 표회의의 구성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다. 조사결과 : 불인용

부서 및 민원인을 면담하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민원인은 동대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판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를 했더라도 이후 그 잔여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이 민원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어 안내를 해주었다.

○○동 ○○-72 공사 피해 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손○○
- 신청일 : 2016. 11. 15.
- 민원요지 : 마포구 ○○동 ○○-72 민원인 소유 주택이 ○○개발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마포구 ○○동 ○○-48 외 6필지 지상의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I, II」로 인하여 주택의 균열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보상 내지 복구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

나. 조사내용

- 1) 민원인의 주택을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주택의 벽체, 담장 등에 균열이 많이 발생되었고 일부 지붕까지도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 2)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사항 등을 검토해서 2016. 12. 7.에 개최된 마포구 옴부즈만 회의에 민원 상대방인 ○○개발주식회사 전○○ 상무, ○○건설 주식회사 조○○ 현장소장(이하 ‘민원 상대방’ 이라고 함)을 참석하게 하였다. 2015. 5월 양자가 합의한 합의서를 중심으로 합의배경, 합의내용과 그 동안의 경위, 민원인 주택의 현재 위험 상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어서 옴부즈만은 이 건 민원의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상대방 측에
가) 먼저, 민원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나) 추가 보상과
다) 양 당사자들 간에 화해 등을 적극 권유했다.
- 3) 이에 대해 민원 상대방은 “이미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5. 5. 29.에 지급한 보상금은 주택의 개보수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나 민원인이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주택을 개보수 하지 않아 현재 상태와 같이 추가 균열이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 ombudsman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민원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상태이고 특히, 추운 한 겨울에 민원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문제가 있으니 추가 보상 및 형사고소 취하 등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하자 민원 상대방 측은 “본사에 돌아가 논의해서 결과를 통지 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해서 회의가 종료되었다.

5) 그 뒤, 민원 상대방 측은 ‘합의 불가’ 의견을 통보해왔고 이에 대하여 ombudsman은 형사고소라도 취하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듭 요청하였지만 민원 상대방 측은 그 동안 이 건 민원으로 인해 받은 고통이 커 고소취하 의사도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더 이상 협의는 어렵게 되었다.

다. 조사결과 : 불인용

마포구 ○○동 ○○-72 공사 피해 보상 민원 건은 합의 당사자인 ○○개발주식회사 측에 민원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권유했으나, ○○개발주식회사 측에서는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합의 조정을 거절하였으므로 이에 부득이 ‘불인용’으로 결정한다.

02 제도개선 주요 사례

주민 의견수렴 방법 관련 개선방안 권고

가. 권고취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요 정책 결정 및 각 분야의 행정추진에 이를 반영하는 일은 민의(民意)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추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방법은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전문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이 없어 각 부서마다 임의로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시스템을 정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문화 정착과 정확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나. 권고이유

1) 현황

가) 개요

구 정책 결정 및 행정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현재 각 부서별로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효과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부서별로 임의로 수렴하고 있어 그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고, 의견수렴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반대 민원인들이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시스템을 정립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책결정 및 행정추진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주민 의견수렴 대상(예시)

행정동 경계 조정, 마을버스 노선변경, 주민예산 제안, 공공시설물 설치 또는 사용 용도의 결정, 구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각종 사업추진 후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단, 여기서 말하는 주민 의견수렴은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개선방향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개별적인 법령 또는 타 조례, 지침 등에 이미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 권고를 참작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아울러 권고한다.

가) 주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시스템 정립(예시 조례 제정 등)

나) 필요적 또는 임의적인 주민 의견수렴 대상 특정

다) 주민 의견수렴 대상 선정 방법(사안의 특이성에 따라 달라질 것임)

라) 표준적인 주민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서식 등 마련

마) 광범위하거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조사요원(예산편성을 고려, 공익근무요원 또는 공공근로 활용방안 검토) 확보 필요

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 방법론 교육기회 마련

사) 의견수렴에 필요한 예산 확보

아) 의견수렴 반영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수단 확보 방안

자) 주민의견수렴 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방안 등

다.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 및 참작하여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시스템을 정립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들과의 소통에 기여할 것을 권고한다.

0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사례

2015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16. ~ 2015. 12. 31.
- 사업규모 : 아스팔트 포장 261a, 콘크리트 포장 11a, 소형고압블록 포장 25a
- 사업비 : 2,045,000,000원
- 추진현황
 - 2015. 3. 3. : 입찰공고
 - 2015. 3. 16. : 계약체결 및 착공
 - 2015. 6. 15. : 설계변경 1회
 - 2015. 9. 17. : 설계변경 2회
 - 2015. 10. 30. : 설계변경 3회
 - 2015. 12. 15. : 설계변경 4회
 - 2015. 12. 31. : 준공

나. 평가결과

- 1) 이 사업은 관내 노후·불량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청렴계약 감시·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업 중 사업규모가 가장 큰 “성미산로1길 100 ~ 성미산로 5” 현장을 토목과 담당 주무관과 함께 방문하였다.

가) 사업명 :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뒷골목 환경 정비

나) 위치 : 성미산로1길 100 ~ 성미산로 5

다) 규모 : 아스팔트 포장 B=7m, L=550m, A=38.5@, 측구 및 경계석 설치 L=320m

라) 금액 : 100,000천원

마) 사업기간 : 2015. 4. 23. ~ 5. 17.

- 2) 대부분의 도로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다만 예산을 들여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신축 공사 시 도로를 굴착하고 마무리가 거칠게 된 2곳이 있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또한, 위와 같이 도로굴착 마무리가 거칠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포장된 도로 인근 건물의 신축 시에 필요한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등은 가급적 1회 굴착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과와 협조하여 사용승인 전에 도로굴착 복구공사 상태 확인 후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4) 그렇지 않고 건물 사용승인 이후에 이미 시공자가 철수한 상태에서 건축주를 상대로 보완·복구 요청을 한다면 그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복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조치결과 : 의견표명

도로굴착 후에 마무리가 거칠게 된 2곳은 시정하도록 하고, 새로 포장된 도로 인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도로굴착 복구 상태를 확인하여 복구가 미흡하게 되는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015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20. ~ 2015. 12. 31.
- 사업규모 : 디자인 난간 설치 및 보수 155경간 등
- 위 치 : 마포구 관내
- 사 업 비 : 1,030,153,600원
- 추진현황
 - 2015. 3. 4. : 2015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행
 - 2015. 3. 18. : 계약 체결
 - 2015. 3. 20. : 공사 착공
 - 2015. 12. 31. : 준공

나. 평가결과

- 1) 이 사업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청렴계약 감시·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업 중 사업규모가 가장 큰 “성미다리 데크 정비” 현장을 토목과 담당 주무관과 함께 방문하였다.

가) 사 업 명 : 성미다리 데크 정비

나) 위 치 : 성산시영아파트 ~ 월드컵경기장 사이

다) 규 모 : 목판판재 정비

라) 금 액 : 48,951천원

마) 사업기간 : 2015. 6. 18. ~ 8. 7.

- 2) 성미다리 데크는 깔끔히 잘 정비된 상태였으며, 다만 현재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청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난간 쪽에 담배꽂초 등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었다.

- 3) 그리고 제설함이 다리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 부딪힐 우려가 있으므로 입구 쪽이라든지 적당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요청한다.



다. 조치결과 : 의견표명

시정이 필요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위의 2가지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도로서 설물 유지 관리에 힘쓸 것을 의견표명한다.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
- 사업규모 : 관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사업비 : 73,000,000원
- 추진현황
 - 2016. 2. 4.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계획 수립
 - 2016. 2. 24. : 용역 입찰공고
 - 2016. 3. 11. : 계약 체결

나. 평가결과

- 1) 이 사업은 단속 사각시간대(평일 야간, 주말 등)에 불법유동광고물이 성행함에 따라 단속을 회피하여 지능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표시하는 광고주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로 불법유동광고물 난립을 억제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휴일(08:00~12:00, 13:00~17:00) 및 평일 야간(18:00~22:00)에 용역원 3인 1조(운전원 1인, 정비원 2인)이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관내를 차량으로 순찰하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수행한다. 마포구 관내를 정비하지만 특히 양화로, 신촌로, 마포대로, 독막로, 월드컵로, 월드컵북로 등을 중점으로 정비하고, 용역원은 정비시간에 마포구청으로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하고 매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전후 결과를 도시경관과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2) 최근 몇 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해에 사업비가 5천만원이 넘어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단속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용역원들이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2015년 사업 추진 결과, 12,217건을 정비하였으며 이는 직원 정비량의 35%이고 시간당 수거량은 단속반 대비 11개 높았다.

3) 이 사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22조(안전사고)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업지시서보다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참가 업체가 입찰 시에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는 하지만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서 면담 시에 위의 사항과 안전 사고 발생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다. 조치결과 : 없음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 2. ~ 2016. 4. 15.
- 사업규모 :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3식
- 위 치 : 마포구청 IT운영센터 내
- 사 업 비 : 131,939,000원
- 추진현황
 - 16. 3. 14. : 구매계획 승인
 - 16. 3. 23 ~ 4. 15. : 장비납품 및 설치
 - 16. 4. 15. : 검수 및 도입완료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정보보안 장비인 침입방지시스템(행정망과 외부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침입행위를 실시간 탐지, 분석 후 비정상적 침입행위를 차단하는 장비)와 내피시지키미(개인PC의 보안상태를 점검·개선하기 위한 보안점검 프로그램)를 구매한 사업이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안정성이 저하된 장비를 조달구매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다. 조치결과 : 없음

사회복지시설 LED 구매 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5. ~ 2016. 7.
- 사업규모 : LED 1,462개 구매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추진현황
 - 2016. 5. 10. : 사업예산 국비 교부
 - 2016. 5. 18. : 물품구매 계약
 - 2016. 6. : 물품 납품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마포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조명등(LED)을 구매·보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전력효율을 향상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어르신, 장애인 복지시설 중 노후되고 조명시설 개선이 시급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창업복지관에 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LED 총 1,462개를 설치한 것으로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시정이 필요한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다. 조치결과 : 없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 4. ~ 2016. 6.
- 사업규모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11대 성능개선
- 위 치 : 마포대로 86 외 10곳
- 사 업 비 : 116,035,000원
- 추진현황
 - 2016. 4. 4.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2016. 4. 6. : 조달구매
 - 2016. 5. 26. ~ 5. 30. : 물품 검수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마포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중 노후된 CCTV의 카메라 및 서버를 조달구매를 통해 교체한 사업이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면담하였으나 시정을 요할 만한 특이사항은 찾지 못했다. 다만 현재 마포구 관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가 총 72대인데,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과 물품관리대장의 주·정차 단속용 CCTV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일치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과 물품관리대장의 주·정차 단속용 CCTV 현황을 일치시킬 것을 의견표명한다.

와우교 기능개선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 8. ~ 2016. 8. 13.
- 사업규모 : 거더 및 상판 교체(B=14.2m, L=20m)
- 사업비 : 600,000,000원
- 추진현황
 - 2016. 3. 7. : 공사계약 체결
 - 2016. 5. 9. : 홍대방향 상판 레미콘 타설
 - 2016. 5. 24. : 신촌방향 상판 및 거더 철거
 - 2016. 8. 11. : 공사 준공

나. 평가결과

와우교는 1969년 건설되었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이 나와 전체적인 균열과 철근 부식 등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기능개선 공사를 완료하였다. 와우교는 폭 14.2m, 연장 20m의 교량으로 교량슬래브를 지지하는 거더를 현장에서 제작하지 않고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 운반하는 공법을 채택하였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노후된 와우교 개선공사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자재 선정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조치의견 : 없음

홍제천 산책로 정비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 14. ~ 2016. 7. 12.
- 사업규모 : 자전거도로 재포장 B=4m, L=2,000m
- 위 치 : 홍제천(사천교 ~ 한강합류부)
- 사 업 비 : 483,545,000원
- 추진현황
 - 2016. 3. 17. : 공사 시행
 - 2016. 4. 11. : 공사 계약
 - 2016. 6. 1. : 예비준공검사 실시
 - 2016. 7. 8. : 설계변경 실시
 - 2016. 7. 12. : 공사 준공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홍제천(사천교~한강합류부) 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한 사업이다.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던 자전거도로의 표층을 절삭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재포장하고 그 위에 미끄럼방지포장재까지 시공하였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아스팔트 포장 시에 투수성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치의견 : 없음

2016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 4. ~ 2016. 12. 30.
- 사업규모
 - 디자인난간 설치 및 보수 : 155경간
 - 방음벽 및 시설물 세척 : 34,000m²
 - 도로반사경 설치 33개소
 - U형 프로텍트폴 125경간
- 사 업 비 : 798,366,000원

나. 평가결과

- 1) 이 사업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2016. 1. 19.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관내 볼라드 전수 조사를 요청하여 토목과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2006년) 이전에 설치되어 현재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 272개를 적출하여 정비하였다.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고 담당자 면담 시에 계약 업체에 기성금을 제때제때 지급할 것을 당부하였다.
- 2) 학생들의 보행 시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한 “성산초등학교 주변 데크 및 옹벽 보수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공사는 깔끔히 마무리된 상태였으며, 다만 계단 일부에 미끄럼방지턱(몰딩)이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어 시정요구하였다.

다. 조치의견 : 시정요구

현장 방문 시에 발견한 미끄럼방지턱(몰딩)이 미설치된 부분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

동도중학교 주변 보도확장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5. 2. ~ 2016. 12. 22.
- 사업위치 : 백범로 25 주변(동도중, 서울디자인고 근처)
- 사업규모 : 보도확장 B=1.5m→3.5m(L=160.0m), 학교 내 E/V 1기 설치
- 사 업 비 : 725,841,000원

나. 평가결과

- 1) 이 사업은 동도중학교 현장방문 시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으로 백범로 25길은 동도중학교, 서울디자인 고등학교, 서울여자 중·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한 통학로이지만 도로가 좁아(1.5m)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다. 동도중학교보다 더 안쪽에 위치한 서울여중·고 학생들이 이 통학로를 주로 이용하는데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말 잘한 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특히 학교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측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을텐데, 동도중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법인에서 제공한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폭 1.5m인 보행로를 3.5m로 확장하였다.
- 2) 2016. 8월말 현장 방문 시에는 동도중학교 쪽으로 데크를 깔아 인도를 확보하는 중이었으며, 데크 밑 부분에 비닐포장지 여러 개와 시멘트가 엉켜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다.

다. 조치의견 : 없음

2016년 구립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6. 1. ~ 2016. 8. 31.

○ 사업규모

구분		내역	수량
통합 시스템	도서관리서버	DB서버	1식
	웹서버	웹서비스	1식
	백업테이프	LTO-6 Drive	1식
	DBMS	Oracle	1식
	백업	백업 소프트웨어	1식

○ 사 업 비 : 114,004,000원

나. 평가결과

1) 이 사업은 구립도서관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중지 상황에 대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을 강화하여 도서관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서강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체 구립도서관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며, 기존 구립도서관의 노후된 서버 등을 교체하였다.

2) 내후년에 개원 예정인 마포구 중앙도서관의 시스템과 이번에 구매한 시스템이 상호호환되는 지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하였고 기존 서버는 활용가능하였다. 또한, 도서관팀과 중앙도서관 추진단이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여 중앙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향후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타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도서관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향후에 사업을 추진 시에 타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도서관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구 청사내 무선인터넷 구축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1. 18. ~ 2016. 12. 21.
- 사업규모 : 무선접속장비 100대 설치, 유선 및 무선망 보안시스템 구축 등
- 사 업 비 : 296,255,000원
- 추진현황
 - 2016. 8. 30. : 무선인터넷 구축 계획 수립
 - 2016. 12. 21. : 사업 준공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마포구 종합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무선인터넷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사 전역에 무선인터넷(Wi-Fi)시스템 구축을 한 사업이다. 사업 실시 전에는 청사 2층 민원실, 12층 하늘도서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청사에 무선인터넷 구축은 필요하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마포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행정망과 분리된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무선인터넷 접속 인증화면을 통해 구정을 홍보한다.

다. 조치의견 : 없음

CCTV 자가통신망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06. 17. ~ 2016. 12. 13.
- 사 업 비 : 653,100,000원
- 사업규모 : CCTV 관제센터와의 영상연계를 위한 자가통신망 연결
 - 광케이블 신규포설(13.3km) 및 루트 변경에 따른 기존케이블 철거(4.3km)
 - 광통신장비 설치 및 광케이블 절체접속(1,622Core)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2016년 방법 CCTV 구축 사업에 따른 고품질 영상전송을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관련 부서를 면담하고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찾을 수 없었다. 2015년에 이 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시에 CCTV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6. 11.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다. 조치의견 : 없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사업규모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67대에 대한 유지보수
- 사업비 : 86,601,000원
- 사업내용
 - CCTV시스템 관련 운영되는 통신망, 전산장비, 주변장치(H/W, PC 관련 서버 등)
 - 영상 및 음성 전송장비 운영 S/W
 - 문자인식시스템, 원클릭 제어 S/W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S/W 등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신속한 장애복구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체계를 마련한 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은 2004년~2014년식의 67대이다. 관련 부서와 면담하고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었고 계약 업체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시정할 부분이 생기면 바로 시정을 요구하고 용역 업체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시정할 부분이 생기면 바로 시정을 요구하고 용역 업체 평가에 반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마포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8. 29. ~ 2017. 2. 24.
- 사 업 비 : 88,000,000원
- 사업내용 : 브랜드 슬로건 개발, 브랜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 시스템 개발, 매뉴얼 개발, 브랜드 상표출원 및 등록

나. 평가결과

- 1) 이 사업은 “I ♥ NY”, “Be Berlin”, “Iamsterdam”처럼 대내외적으로 마포구를 대표하고 마포구가 지닌 고유의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여 구민의 참여도 이끌어내었다. 용역 업체는 2015년에 서울시 도시브랜드(I.SEOUL.U)을 개발한 업체로 선정되었다.
- 2) 배스킨라빈스의 로고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잘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포의 새 브랜드는 누구나 쉽게 마포구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고 젊은층과 노년층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마포는 한강이 있어 흐르는 느낌의 심볼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인과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차이가 큰데 이를 잘 좁혀서 브랜드를 개발하기를 바란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누구나 쉽게 마포구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고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8. ~ 2016. 12. 31.
- 사업규모 :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7,428등)
- 사업비 : 326,400,000원
- 추진현황
 - 2016. 1. 6. : 유지보수 공사 시행
 - 2016. 1. 18. : 공사 계약 체결
 - 2016. 12. 26. : 공사 준공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노후·불량 가로등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마포구에는 현재 가로등 7,428대와 보안등 9,842가 있다. 2015년에는 총 10,306건(가로등 : 6,096건, 보안등 : 4,210건)을 유지보수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다. 조치의견 : 없음

04 기타 활동 사례

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체 발족 적극 참여

1) 추진경위

가) 2016.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옴부즈만 협의체 발족을 위한 지방옴부즈만 스티어링 그룹(Steering group, 운영위원회) 구성 : 마포구, 구로구, 서대문구, 안양시, 시흥시

나) 2016. 8. 5. 안양시 주관 지방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다) 2016. 10. 13.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옴부즈만 업무협력 워크숍 참석

라) 2016. 10. 21. 안양시 주관 지방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2) 우리구 주관 간담회 개최

가) 일 시 : 2016. 12. 1. (목) 18:30

나) 참석대상 : 안양시 옴부즈만, 구로구 옴부즈만, 서대문구 옴부즈만, 시흥시 호민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과장·사무관 등

다) 회의내용 : 전국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구성 준비 등

나.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인권이야기 특강 실시

1) 일 시 : 2016. 12. 2.(금) 14:00 ~ 16:00

2) 주 제 :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인권의 중요성 등

3) 강 사 : 김철기 옴부즈만

다.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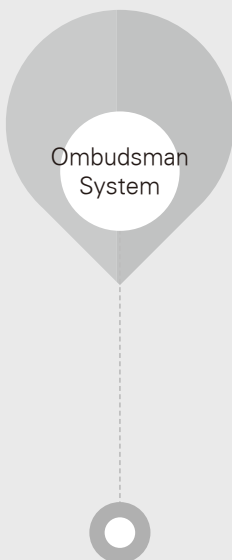
1) 일 시 : 2016. 12. 23.

2) 참석결과 : 신정도시개발구역의 도로개설계획 변경 요구 수용여부 등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 현장 방문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함

라.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면접평가 위원 선정 참관

1) 일 시 : 2016. 12. 29.

2) 참관결과 : 면접평가 위원 명부선정에 참관함으로써 구 계약체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구 이미지 제고



IV. 참고 자료

-
1. 주요 언론 보도 내역
 2. 정례회의 추진일지
 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4.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IV. 참고 자료

01 주요 언론 보도 내역

한겨레신문 2016. 3. 17.

한겨레
THE HANGYERE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S05면 기획/특집 12.7 x 10.3cm

마포구, 옴부즈맨·공공사업 감시하고 민원 해결까지 '척척'

마포구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김철기 변호사, 김순도 건축사, 전직 공무원 이수복씨 등 3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사진)을 출범시켰다. 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 과정 감시·평가, 구민 30명 이상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미해결된 채 반복되는 민원의 조사·조정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건축, 교통, 산업경제 등 30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어린이집, 서교동 주민센터 등 26건의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소음 방지 시공, 장애인 경사로 난



간 높이 보강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임기 1년을 남겨둔 이수복 대표 옴부즈맨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참신한 구정 발전을 위해 구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충 민원은 마포구 누리집이나 마포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16-03-10

마포구 옴부즈만 시행 1년... '효과 톡톡'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난해 1월 구정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마포구 옴부즈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김철기 변호사, 김순도 건축사, 이수복 전직 공무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 감시, 평가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주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원조사 여부, 옴부즈만별 안건 배정, 조사결과 처리 등을 전 원합의제로 결정한다.

구는 마포구 옴부즈만은 정례회의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옴부즈만 운영의 틀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주택건축, 도시계획, 교통, 녹지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30건을 접수해 직접조사 7건, 민원인과 해당 부서와의 협의 23건 등을 처리완료했다.

구체적인 주요 해결사례로는 장기 반복민원을 20일 만에 해결한 '과소지급된 수용보상금 지급 건'을 꼽았다.

이 민원은 1989년 도로개설공사 시, 수십 년 전 잘못 표기된 지번으로 인해 거주지와 도로가 뒤바뀌어 도로가 아닌 실제 거주지가 수용되면서 발생했다.

민원인은 사업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야 함에도, 거주지가 도로로, 도로가 거주지로 잘못 표기돼 있어 도로로 오기된 거주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더구나 보상을 받은 땅의 면적은 실제로 도로가 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 면적보다 적어 민원인은 수용보상금을 적게 지급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민원인은 각종 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하는 것은 물론, 과소지급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이 민원에 대해 "수 십년이 지난 과오에 대해 법률적 평가의 어려움이 따랐지만 수용보상금은 전액 지급됐을 때 법률적 완성이 된다는 기준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일단락 시켰다.

이수복 대표 옴부즈만은 "아무리 오래된 민원이라도 옴부즈만이 나서 구민과 공무원의 간극을 메우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노력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구민의 권리가 구제되고, 구민의 행정신뢰도가 다시 쌓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포구 옴부즈만이 구민고충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 옴부즈만 시행 1년... '효과 톡톡'

【서울=뉴스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난해 1월 구정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마포구 옴부즈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김철기 변호사, 김순도 건축사, 이수복 전직 공무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 감시, 평가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주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원조사 여부, 옴부즈만별 안전 배정, 조사결과 처리 등을 전 원합의제로 결정한다.

구는 마포구 옴부즈만은 정례회의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옴부즈만 운영의 틀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주택건축, 도시계획, 교통, 녹지환경, 경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30건을 접수해 직접조사 7건, 민원인과 해당 부서와의 협의 23건 등을 처리완료했다.

구체적인 주요 해결사례로는 장기 반복민원을 20일 만에 해결한 '과소지급된 수용보상금 지급 건'을 꼽았다.

이 민원은 1989년 도로개설공사 시, 수십 년 전 잘못 표기된 지번으로 인해 거주지와 도로가 뒤바뀌어 도로가 아닌 실제 거주지가 수용되면서 발생했다.

민원인은 사업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야 함에도, 거주지가 도로로, 도로가 거주지로 잘못 표기돼 있어 도로로 오기된 거주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더구나 보상을 받은 땅의 면적은 실제로 도로가 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 면적보다 적어 민원인은 수용보상금을 적게 지급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민원인은 각종 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하는 것은 물론, 과소지급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이 민원에 대해 "수 십년이 지난 과오에 대해 법률적 평가의 어려움이 따랐지만 수용보상금은 전액 지급됐을 때 법률적 완성이 된다는 기준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일단락 시켰다.

이수복 대표 옴부즈만은 "아무리 오래된 민원이라도 옴부즈만이 나서 구민과 공무원의 간극을 메우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노력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구민의 권리가 구제되고, 구민의 행정신뢰도가 다시 쌓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포구 옴부즈만이 구민고충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꼬인 문제 해결사 '마포구 옴부즈만'

민권의 구제 특명 마포구 옴부즈만 도입 1년
다수인민원, 장기미해결 반복민원도 '능수능란'

마포구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마포구 옴부즈만'이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다수인 민원, 장기미해결 반복 민원 등 꼬인 문제 해결에 좋은 성과를 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월 위촉된 마포구 옴부즈만은 김철기 변호사, 김순도 건축사, 이수복 전직공무원 등 총 3명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 감시, 평가 등이다. 주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원조사 여부, 옴부즈만별 안건 배정, 조사결과 처리 등을 전원합의제로 결정한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정례회의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옴부즈만 운영의 틀을 잡았다.

주택건축, 도시계획, 교통, 복지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30건을 접수해 직접조사 7건, 민원인과 해당 부서와의 협의 23건 등을 처리완료했다.

장기 미해결 민원의 주요 해결사례로는 장기 반복민원을 20일 만에 해결한 '과소지급된 수용보상금 지급 건'이다.

이 민원은 1989년 도로개설공사시, 수십 년 전 잘못 표기된 지번으로 인해 거주지와 도로가 뒤바뀌어 도로가 아닌 실제 거주지가 수용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민원인은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야 함에도 거주지가 도로로, 도로가 거주지로 잘못 표기돼 있어 도로로 오기된 거주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더구나 보상을 받은 땅의 면적은 실제로 도로가 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 면적보다 적어 민원인은 수용보상금을 적게 지급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민원인은 각종 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하는 것은 물론 과소지급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낸 것.

옴부즈만은 수 십년이 지난 과오에 대해 법률적 평가의 어려움이 따랐지만 수용보상금은 전에 지급됐을 때 법률적 완성이 된다는 기준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해당부서는 옴부즈



마포구 옴부즈만이 민원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만의 의견표명 사항을 적극 수용, 민원인에게 미분보상금을 지급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했다.

이 외에도 용강동 복합청사를 비롯해 어린이집, 성미산 체육센터 등 현장정검을 통해 26건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 시정요구 11건, 권고 4건, 의견표명 8건을 제시하였으며, 대부분 수용됐다.

구는 마포구 옴부즈만 출범1년을 맞아 지난 7월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철기 옴부즈만이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과 주요 활동 사례를 설명했다.

이수복 대표 옴부즈만은 "아무리

오래된 민원이라도 옴부즈만이 나서서 구민과 공무원의 간극을 메우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구민의 권리가 구제되고, 구민의 행정신뢰도가 다시 쌓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참신한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민원 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고충민원 신청은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마포구 홈페이지나 구청 8층 옴부즈만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기성 기자 sks@

고충민원 해결사, 마포구 옴부즈만 ‘만점 활약’

지난해 1월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 고충 및 반복민원 해결 척척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마포구 옴부즈만이 고충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척척 풀어나가는 한편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조정과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구청 8층 옴부즈만실에는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마포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마포구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구청 옴부즈만실을 방문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A아파트 인근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돼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 관계부서를 방문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마포구에 옴부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마지막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드렸다. 먼저 옴부즈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여러 환경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총 7차례에 걸쳐 옴부즈만의 주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건축 관계자

와 면담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두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커 난항을 겪었으나 옴부즈만이 양 쪽 다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자칫하면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민사소송까지 갈뻔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옴부즈만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번 민원 해결을 계기로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이수복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보람을 느낀다.”며, “구청 8층 옴부즈만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민원이 있다면 부담없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의 활약으로 억울한 민원이 해결되기도 했다. 구민 B씨는 마포구에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청했으나 부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유로 반려했다. 과거 이 음식점이 4번에 걸쳐 영업자 명의변경 허가를 받은 적이 있어 부당함을 느낀 B씨는 마포구 옴부즈만을 찾았다.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한 결과 위반건축물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맞지만 민원인으로서 과거의 허가로 인해 무리없이 지위 승계가 이뤄질 거라는 행정의 신뢰가 생긴 점 등을 들어

이번에 한해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해줄 것을 마포구에 의견 표명하였고 해당 부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은 변호사, 건축사, 前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반복민원 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결정 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을 선정하고 이후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의견표명하거나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5회 정례회의를 열어 30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민원 접수 건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사 민원, 주차민원, 청소민원 순으로 많았다.

한편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내고자 하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 8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옴부즈만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고충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구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물론, 열린 행정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모 기자



마포구 ombu즈만의 정례회의 모습, 이수복 대표 ombu즈만(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마포구 ombu즈만, 고충민원 해결 척척

올해 상반기 25회 정례회의, 30건 민원 조사·처리

서울 마포구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마포구 ombu즈만이 고충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담당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척척 풀어내는가 하면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조정과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구청 8층 ombu즈만실에는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마포구의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마포구 ombu즈만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구청 ombu즈만실을 방문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번 민원 해결을 계기로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이수복 대표 ombu즈만은 "ombu즈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보람을 느낀다"며 "구청 8층 ombu즈만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

지 않은 민원이 있다면 부담없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마포구 ombu즈만은 변호사, 건축사, 前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반복민원 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결정 여부 및 주관 ombu즈만을 선정하고 이후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의견표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5회 정례회의를 열어 30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했다.

ombu즈만에 따르면 민원 접수 건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사민원, 주차민원, 청소민원순으로 많았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ombu즈만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고충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구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열린 행정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철 기자 jcleee@shinailbo.co.kr

마포구 옴부즈만, 반복민원 해결 척척

올해 상반기 30건 민원 조사·처리, 감사 인사 이어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마포구 옴부즈만이 고충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척척 풀어내는가 하면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조정과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구청 8층 옴부즈만실에는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마포구의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마포구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구청 옴부즈만실을 방문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A아파트 인근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

작돼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입주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 관계부서를 방문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마포구에 옴부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마지막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드렸다. 먼저 옴부즈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여러 환경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총 7차례에 걸쳐 옴부즈만의 주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건축 관계자와 면담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두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을 겪었으나 옴부즈만이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자칫하면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의 민사소송까지 갈뻔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옴부즈만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번 민원 해결을 계기로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포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이수복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보람을 느낀다”며, “구청 8층 옴부즈만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민원이 있다면 부담없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의 활약으로 억울한 민원이 해결되기도 했다. 구민 B씨는 마포구에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청했으나 부서에서

는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유로 반려했다.

과거 이 음식점이 4번에 걸쳐 영업자 명의변경 허가를 받은 적이 있어 부당함을 느낀 B씨는 마포구 옴부즈만을 찾았다.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한 결과 위반건축물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가 이뤄지지않는 것은 맞지만 민원인으로서 과거의 허가로 인해 무리없이 지위 승계가 이뤄질 거라는 행정의 신뢰가 생긴 점 등을 들어 이번엔 한해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해줄 것을 마포구에 의견 표명하였고 해당 부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은 변호사, 건축사, 前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반복민원 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경순기자21ps@skkbo.com

02 정례회의 추진일지

제2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1. 13.)

■ ○○동 ○○빌라 공동주택 관리 요망 민원

- 참석자 : ○○빌라 반상회 회장, 총무, 입주민
- 민원인 의견
 - 현재 관리비는 매달 일정 금액을 동대표가 세대별로 걷어서 총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있음
 - 마땅한 별이 없는 노인들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어, 모든 입주민에게 추가로 돈을 걷어 아파트 외벽이나 지붕 보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옴부즈만 의견
 - 놀이터, 운동기구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빌라는 현재 공식적인 관리기구나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을 준용하여 관리규약을 만들어야 할 것
 - 옴부즈만에서 관리규약 초안을 작성하여 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으니 설 지나고 회장, 총무, 동 대표를 모아주었으면 함
 - 관리규약을 만들면 주민들끼리의 약속이니 강제성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그에 따른 회장, 총무의 일은 많아질 것임

제4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1. 28.)

■ 신수동 동해그랑빌 민원 검토

-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2016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 중이므로 민원인에게 이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규약 제정은 설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마포구민체육센터 현장 방문

- 현재 강좌를 수강 중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구민체육센터의 불편사항에 대해 물어보았음
 - 시설은 아주 좋고 멋지나 구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음
 - 다른 구민체육센터는 구민에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는데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없으며, 개관 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15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짧았음
 -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고 셔틀버스도 없어 다른 동에서 오기가 힘들
 - 3층 라인댄스, 요가 강의실은 철문이 아닌 유리문으로 보수 요청

제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2. 3.)

■ 2015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현장 방문

- 참 석 자 : 토목과 담당 주무관
 - 건축물 신축 건축 공사 시에 도로굴착을 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2곳 발견
 - 토목과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건축과에서 준공 시에 준공 조건으로 토목과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2015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 방문

- 참 석 자 : 토목과 담당 주무관
 - 성미다리 데크 곳곳 청소 요망
 - 제설함이 성미다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가 부딪히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다리 입구 쪽으로 옮겨야할 것으로 판단됨

제8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3. 2)

■ ○○아파트 PC방 입점 반대 민원 검토

- 참 석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총무, 관리소장
- 민원인 의견
 -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상대구역 범위에 해당하므로 PC방 입점 불가 결정됨
 - 이에 대하여 PC방 업주는 재신청을 하여 지적측량(○○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인지 여부에 대한 재 측량)을 하였으나, 그 결과 역시 200미터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며, 이에 대하여 PC방 업주는 다시 제3차에 걸친 측량신청을 하였다고 함
- 옴부즈만 의견
 - 민원인들은 PC방 신청 업주가 대지 공유권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인 MDF 이용(단지 내 전산 통신선을 PC방 게임기에 연결 사용하려는 목적임)권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법률적인 책임성에 대하여 문의
 - 이 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위원들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해줌

제9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3. 16.)

■ 아현시장 안 및 주변 통행 불편 민원 검토

- 지역경제과 의견
 - 현재 상황으로도 시장 내에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으며, 노점 및 불법건축물 단속은 건설관리과와 도시경관과에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임
- 도시경관과 의견
 - 모든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아현시장 내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81년 전 기존무허가 건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는 어려움
- 건설관리과 의견
 - 아현시장 인근 노점 및 가판대 단속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하겠음

■ 홍대 기숙사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 검토

- 참 석 자 : 권○○

○ 민원인 의견

- 작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시공사 측과는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고 있음
- 요구 사항은 소음 및 진동 피해 최소화, 주택 균열 보수, 안전진단 재 실시, 임대수입 감소 보상, 발코니 설계 변경임
- 2016. 3. 11. 건축과장 주재로 시행사, 시공사, 감리 등이 참석하여 민원 처리 방향 등에 대한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우선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음

제11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3. 30.)

■ 아현시장 통행불편 민원 현장 방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국비, 지방비, 구비 등으로 시장 내 아케이드 등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음
- 대부분 기존 건물에서 튀어나온 점포들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미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또는 천막 지붕 등을 설치하였고, 도로는 노란색 자율 경계선을 설치하여 그 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음
- 일부 자율 경계선 밖으로 상품이 진열된 곳은 수시로 계도하고 특히 상인연합회 회장, 상인 등과 대화를 많이 나눠 시장 자체의 자율성을 갖는 질서 있는 전통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제13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4. 15.)

■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 방문

- 참 석 자 : 추진단 시설팀장, 담당 주무관 등
- 현재 공정율은 22%이며, 지하2~3층 기초 공사 중임
- 감리단, 시공사 측에 발주청인 마포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해진 공사기간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 진행할 것을 당부
- 발주청, 감리단, 시공사 사이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 당부
- 옴부즈만 현장 방문 시에 공사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서류 보고보다는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질의에 답변해줬으면 함
- 건축시공, 전기, 설비 등 각 시행 회사들의 유기적인 연결 및 통합 조정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14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4. 20.)

■ ○○동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거부 이의 민원 검토

- 참 석 자 : 위생과 담당 주무관
- 위생과 의견
 -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고, 과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해주었음.
 - 그러나 식약처 질의회신(식품정책조정과-4356, 2015.5.27)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시에도 일반음식점 신규허가와 동일하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은 지위승계를 수리하지 않고 있음.
- 옴부즈만 의견
 - 식약처의 질의회신이 있긴 하지만, 과거 우리구 보건소가 4차례에 걸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1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4. 26.)

■ ○○동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 거부 이의 민원 검토

- 건축물관리대장과 현재 건축물의 면적이 차이가 나고 위반건축물인 상태 그대로 합법화 시켜줄 수는 없음.
- 현장확인 결과 현재 “○○칼국수”에서 “○○회집”으로 간판이 변경되어 있고, 2층은 일부 수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 현재 민원인은 제3자에게 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약속하여 이를 믿은 양수인은 회집 영업에 따른 수리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위생과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해주지 않아, 양수인과 약속한 영업일이 지나는 등 긴급한 상황임을 호소함.
- 이에 따라, 16. 4. 29. 긴급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여 민원인과 면담 예정

제19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5. 18.)

■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검토

- 참 석 자 : 도시경관과 담당 주무관
 -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보다는 계약 특수조건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업체가 입찰 시에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는 하지만, 입증책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용역 업체에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업체 직원들에게 계약서 상의 용역비 지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행정지도할 것.

제22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6. 8.)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검토

- 노후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 및 서버 교체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 등 검토
- 조달청 제3자 단가로 구매하였는데 수의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업체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후에 업체를 선정해야 함
- 다음 정례회의 때 교통지도과와 면담 예정(불법주정차 CCTV 현황, 관리대장 등)

■ 와우교 기능개선 공사 검토

-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C'를 받은 와우교의 거더 및 상판을 교체 중임
- 평면도, 입면도, 구조계산도, 단면도 등 제출받아 검토 필요

제28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7. 20.)

■ 홍제천 산책로(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검토

- 홍제천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아스팔트 포장 시에 투수성을 고려하였으면 함.

■ ○○동 ○○-2 지번 정정 민원 검토

- 동 ○○-2, 10, 11의 토지 변동 이력을 확인한 결과, 현재 ○○-11번지에 있는 건축물과 ○

- 2번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11번지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경계 및 현황 측량을 하여 공부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음.

제30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8. 3.)

■ ○○마트 쌀 가격 폭리에 대한 시정 요구 민원 검토

- 참 석 자 :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 ○○마트 점장
 - 해당 쌀의 입고가는 35,000원~37,000원 정도이며,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경우 쌀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임
 - 점장에게 민원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과 민원인과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인이 원할 시에 재면담 예정임

■ ○○동 ○○번지 건축 허가 관련 민원 검토

- 참 석 자 : 건축과 건축민원2팀장, 공원녹지와 공원팀장
 - 현황도로인 ○○동 ○○-5(공원부지)의 도로 지정에 대해 의결서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권고 예정임

제31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8. 10.)

■ ○○동 ○○번지 건축 허가 관련 민원 검토

- 참 석 자 : 이○○
 - 민원인 의견 : ○○동 ○○-5는 오랫동안 사용해 온 사실상 현황도로이며, ○○동 ○○번지 건축허가 당시에도 이 현황도로 일부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 또한 종전 ○○동 ○○번지 역시 주출입구가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면 함.
 - 옴부즈만 의견 : 현장을 나가보니, 어린이공원과 이 현황도로가 지형고저의 낙차 폭이 커 공원으로써 기능보다는 현황도로로써 기능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관련 부서에 이와 관련하여 의견표명할 예정임.

제32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8. 17.)

■ 마을버스 마포02번 노선 변경 요청 민원 검토

○참 석 자 :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장

- 민원요지 : 청암대 ↔ 공덕역을 순환하는 기존 버스 노선을 도화동 현대홈타운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
- 검토내용 : 민원인의 요청 내용대로 노약자가 현대홈타운에서 마포역 또는 공덕역을 가기 위해 걷는 것은 힘들어보이긴 하나, 민원접수 후에 도화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데 80%정도가 노선 변경에 반대하였음(소음, 안전문제 및 배차시간 증가). 민원인의 의견도 일리가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커 노선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제34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8. 31.)

■ 토목과 청렴계약 감시·평가 관련 현장방문

○참 석 자 : 토목과 보도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 2016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학생들의 보행 시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한 성산초등학교 주변 데크 및 옹벽 보수 공사는 깔끔히 마무리된 상태였으며, 다만 계단 일부에 미끄럼방지턱이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어 시정 요구함.
- 동도중학교 주변 보도확장 공사 검토
 - 우리구에서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동도중과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으면 함.
 - 현재 학교 쪽으로 데크를 깔아 인도를 확보하는 중이었고 9월말 준공까지 현장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또한, 데크 밑 부분에 비닐포장지 여러 개가 시멘트와 엉켜 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시정요구함.

제3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9. 7.)

■ 2016년 구립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검토

- 참 석 자 : 교육청소년과 도서관팀장, 담당 주무관, 중앙도서관추진단 담당 주무관
- 서강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체 구립도서관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며, 기존 구립도서관 서버 등이 노후되어 교체를 한 사업임.
- 내후년에 개원 예정인 중앙도서관의 시스템과 이번에 구매한 시스템이 상호호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하였고 기존 서버는 활용가능함.
- 또한, 도서관팀과 중앙도서관추진단이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여 중앙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타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도서관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제38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10. 5.)

■ ○○동 ○○빌라 공동주택 관리 요망 민원 현장 방문

- 참 석 자 : 반상회 회장, 총무, 입주민 4인
- 7월 말에 회장이 새로 선임되었으며, 입주민들의 공동체의를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 먼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단체를 설립(사업자등록증 등)하여 집행부를 구성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임
- ○○빌라 입주민들이 규약에 제정되길 원하는 사항(주차 문제, 옥상 관리 등)을 정리하여 김철기 위원에게 제출하면, 김철기 위원이 관리규약 초안을 작성하기로 함

제40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10. 20.)

■ 마포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검토

- 참 석 자 : 공보담당관 홍보기획팀장, 담당 주무관
 - 누구나 쉽게 마포구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고 젊은층과 노년층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함. 마포는 한강이 있어 흐르는 느낌의 심볼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용역 업체는 잘 선정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과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차이가 큰데 이를 잘 좁혀야 함.
 - 배스킨라빈스의 로고가 글씨체를 새로 개발하고 잘 만들어진 로고라고 생각됨.

제44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11. 16.)

■ ○○동 신축 오피스텔 피해 민원 검토

- 참 석 자 : 건축과 담당 주무관
 - 건축 관계자 측에서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입장이며, 그러나 계속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직접 민원인의 집을 수리하여 준다고 했으나 민원인이 거부하였음.
 - 현재 건축 관계자 측에서 민원인을 형사고소하는 등 감정이 골이 깊어진 상태임.

제4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11. 24.)

■ ○○동 신축 오피스텔 피해 민원 검토

- 참 석 자 : 손○○
 - 작년 5월 건축 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당시에는 기동을 받치면 본인의 집이 관창을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심해지고 가옥에 거주하기 어려워졌음.
 - 보상금은 집 수리 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것이므로 작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해 건축 관계자는 가옥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 수준으로 추가 보상을 해주어야 함.
 - 본인의 민원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내주었고, 추가 보상을 해주고 또한 형사고소된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함.

제47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12. 7.)

■ ○○동 신축 오피스텔 피해 민원 검토

- 참 석 자 : ○○개발 전○○ 상무, ○○건설 조○○ 소장
 - 건축 관계자측 의견 : 합의서에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작년에 민원인이 수령한 합의금의 용도는 그때까지 발생한 피해를 보수하라는 것인데, 합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열 등 피해가 가중되었음. 민원인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 인접지의 다른 2가구의 보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곤란함.
 - 옴부즈만 의견 : 현실적으로 민원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상태이고 민원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문제가 있으니 추가 보상 및 형사고소 취하 등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제49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6. 12. 21.)

■ ○○동 공영주차장 및 마포패션지원센터 건립 반대 민원

- 참 석 자 : 교통행정과 주차장팀장,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 민원요지는 도로폐쇄 금지와 패션센터 건립 반대로 요약됨.
 - 옴부즈만 의견 :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던 도로를 폐쇄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 있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들에게 발언권을 주거나 패션센터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민원 해소의 방법임.

0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4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제5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3.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6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각각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이하 “신청인 대표”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

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대표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1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감시·평가(이하 “감시·평가”라 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감시·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계획의 수립)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4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완료 및 기한 연장 통지) 옴부즈만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거나 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신청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제9조(청렴계약 감시·평가 자료제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장은 감시·평가 대상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10조(수당지급)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11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6년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 행 일 2017년 3월

발 행 인 마포구 옴부즈만

주 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

전 화 02-3153-8184

홈페이지 www.mapo.go.kr
